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013. 02. 20 (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18	(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432	(2)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1475	(3)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012.07.12	2012.10.08	2013.02.14	2013.02.14	보건위생과장
(2)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2012.09.10	2012.10.08	2013.02.14	2013.02.14	건강증진과장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2.06	2012.02.07	2013.02.14	2013.02.14	공공시설관리소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조 관련 별표)

(2)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안 제4조)
 -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승 등
- 과태료 5만원 부과(안 제9조)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상 체육시설의 명칭을 시설물에 설치된 간판명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료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과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체육복지 증대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명칭 수정(안 제2조, 별표)
 - 호암1체육관을 호암체육관으로 변경
 - 호암2체육관을 호암 제2체육관으로 변경
- 체육시설 전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4조제1항)
 - 전용료의 전부를 면제하는 행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
 - 그 밖의 감면율은 법률상 명시된 80% 범위로 변경하고, 법률상 명시된 감면 대상을 조례에 반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4조제2항)
 - 노인(만 65세 이상) 이용료 감면율 조정(50% ⇒ 전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19일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위반행위 차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되었다가 2012년 10월 5일 보건소의 소관이 총무위원회로 변경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등의 「지역 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와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 위반행위 차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124개 자치단체 중 4.8%에 해당하는 고양시(100만원), 안산시(200만원), 서울 송파구(이하300만원), 정읍시, 파주시, 평택시 등 6개 자치단체이며,
 - 도내 청주시, 제천시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흡연구역에 대한 대책, 단속의 실효성 등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다가 2012년 10월 5일 보건소의 소관이 총무위원회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34조 제3항에 의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주유소',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음

-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吸煙權)과 해로운 담배연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권리인 혐연권(嫌煙權)에 대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과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았으나,
-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로 불쾌감을 주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나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흡연금지에 따른 흡연구역 또한 확충이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과태료부과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방안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금연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절대정화구역 내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도 금연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흡연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흡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시시비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불이 불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흡연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칙 제1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급적용하게 되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호암1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호암1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은 시설의 명칭과 조례상의 명칭이 상이하여 시설의 명칭과 동일하게 호암체육관과 호암제2체육관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4조제1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되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14조2항은 이용료 감면에 대해 현행 조례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이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 노인분들에 대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 질의: 침을 놓는 행위도 건강진단의 행위에 해당되는가?
- 답변: 유사의료행위에 해당 됨.
- ▶ 질의: 3차이상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답변: 동일 연도에 적발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2)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 ▶ 질의: 흡연의 정의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을 포함하는 것 중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답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더 많이 있음.
- ▶ 질의: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가?
- 답변: 자율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음.
- ▶ 질의: 과태료 부과는 홍보를 위해 시행을 늦추는 것이 어떤가?
- 답변: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이용은 주로 게이트볼장이 해당 되는가?
- 답변: 노인분들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 수정가결

* 흡연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

-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불이 불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 포함

* 부칙 안 제1조 수정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공포한 날
- 과태료 : 2013년 7월 1일 → 2013년 9월 1일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부칙 안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2013년 7월 1일”은 “2013년 9월 1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악	수 정 악
제2조(정의) (생략)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 3.(생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 3.(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과태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 ----- 2013년 9월 1일-----.